

제2574호
2018. 04. 11.

발행인: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
 편집인: 공 보 실 장 신 선 애
 전화: 3396-4952
 (http://www.junggu.seoul.kr)

선	기관의장
람	

구 보

● 고 시

제2018-35호 : 남대문구역 제7-2,9-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(경미한)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.....	2
제2018-37호 : 도로명주소 부여고시	7
제2018-38호 : 도로명주소 폐지고시	8
제2018-275호 : 신당제11구역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	9

● 공 고

서울특별시 제2018-277호 : 중구 여성플라자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	12
서울특별시 제2018-281호 :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	15

※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.

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<<http://www.junggu.seoul.kr>(행정정보→구보/입법예고) 클릭>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● 구보게재의뢰 TEL.(02)3396-4952 / FAX.(02)3396-9022/3

●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,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.

※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※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공												
람												



서울특별시중구

고 시

● 서울특별시중구 고시 제 2018-35호

남대문구역 제7-2,9-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 (경미한)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건설부고시 제123호(1977.06.29)로 정비구역 지정되고, 건설부고시 제425호(1978.12.29)로 정비계획이 지정되었으며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155호(2012.06.14.) 및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6-104호(2016.11.14.)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4-56호(2014.07.09.)호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남대문구역 제7-2, 9-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 제16조,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계획 (경미한)변경 결정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18년 4월 11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1. 정비구역의 지정

가. 정비사업의 명칭 : 남대문 제7-2, 9-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

1) 남대문 제7-2, 9-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(변경)

구분	구역명	위치	면적(㎡)			비고
			기정	증감	변경	
변경	남대문 제7-2, 9-2지구	중구 회현동1가 194-19번지 일대	4,453.4	-	4,453.4	· 택지개발예정축량에 의한 선형 변경

2) 용도지역·지구 결정조서(변경)

구분		면적(㎡)			비율(%)	비고
		기정	변경	변경 후		
합계		4,453.4	-	4,453.4	100.0	
상업지역	일반상업지역	4,453.4	-	4,453.4	100.0	· 택지개발예정축량에 의한 선형 변경

3) 토지이용계획(변경)

구 분	명 칭	면 적(㎡)			비 율 (%)	비 고
		기 정	증/감	변 경		
합 계		4,453.4	-	4,453.4	100.00	
정비 기반 시설	소계	757.0	-	757.0	16.99	
	도로	757.0	-	757.0	16.99	· 택지개발예정측량에 의한 선형변경
택지 (지구)	소 계	3,696.4	-	3,696.4	83.01	
	제7-2, 9-2지구	3,696.4	-	3,696.4	83.01	· 택지개발예정측량에 의한 선형변경

4) 정비기반시설(도시계획시설) 설치계획

가) 도 로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위 치	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 초 결정일	비 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기점	종점				
기정	대로	1	4	35~ 37	간선 도로	3,500	서울역 광장	신당동 광장	일반 도로		총고 제722호 (1936.12.26)	택지개발예정측 량에 의한 선형변경
변경	대로	1	4	35~ 37	간선 도로	3,500	서울역 광장	신당동 광장	일반 도로		총고 제722호 (1936.12.26)	
기정	중로	1	202	20	집산 도로	180 (58)	회현동 1가 194-3	회현동 1가 202-1	일반 도로		건설부고시 제425호 (1978.12.29)	택지개발예정측 량에 의한 선형변경
변경	중로	1	202	20	집산 도로	180 (58)	회현동 1가 194-3	회현동 1가 202-1	일반 도로		건설부고시 제425호 (1978.12.29)	
기정	소로	1	2	10	국지 도로	41	남창동 9-1	회현동 1가 194-1	일반 도로		78.12.29	변경없음
기정	소로	1	a	10	국지 도로	54	회현동 1가 194-1	회현동 1가 194-3	일반 도로		서고 제2012-155호 (2012.06.14.)	입체적 도시계획시설 택지개발예정 측량에 의한 면적변경
변경	소로	1	a	10	국지 도로	54	회현동 1가 194-1	회현동 1가 194-3	일반 도로		서고 제2012-155호 (2012.06.14.)	

※ ()는 구역내 포함되는 연장임

나)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계획(도로)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위 치	구분	기 정	최 초 결정일	비고
기정	소로1-a	도로	회현동 1가 194-34	연장(m)	54m	서고 제2012- 155호 (2012.0 6.14.)	주1)
				폭(m)	10m		
				높이(m)	지하2m ~ 지상8m~14m	도시계획시설(도로)	
				면적(m ²)	지하2m초과, 지상8m~14m초과	비도시계획시설	
기정	소로1-a	도로	회현동 1가 194-34	연장(m)	54m	서고 제2012- 155호 (2012.0 6.14.)	주2)
				폭(m)	10m		
				높이(m)	지하2m ~ 지상5.9m	도시계획시설(도로)	
				면적(m ²)	지하2m초과, 지상5.9m초과	비도시계획시설	

- 주1) 회현동 1가 195-4번지(평균해수면 36.88m)와 회현동 1가 194-1번지(평균해수면 42.97m)를 연결하는 연장 54m구간(경사로 구간은 직선보간하여 보정)에 대하여 지하로부터 2m(평균해수면 34.97m~40.97m) ~ 지상8m~14m(평균해수면 50.87m) 사이를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
- 주2) 회현동 1가 195-4번지(평균해수면 36.88m)와 회현동 1가 194-1번지(평균해수면 42.77m)를 연결하는 연장 54m구간(경사로 구간은 직선보간하여 보정)에 대하여 지하로부터 2m(평균해수면 34.97m~40.77m) ~ 지상5.9m(평균해수면 42.77m) 사이를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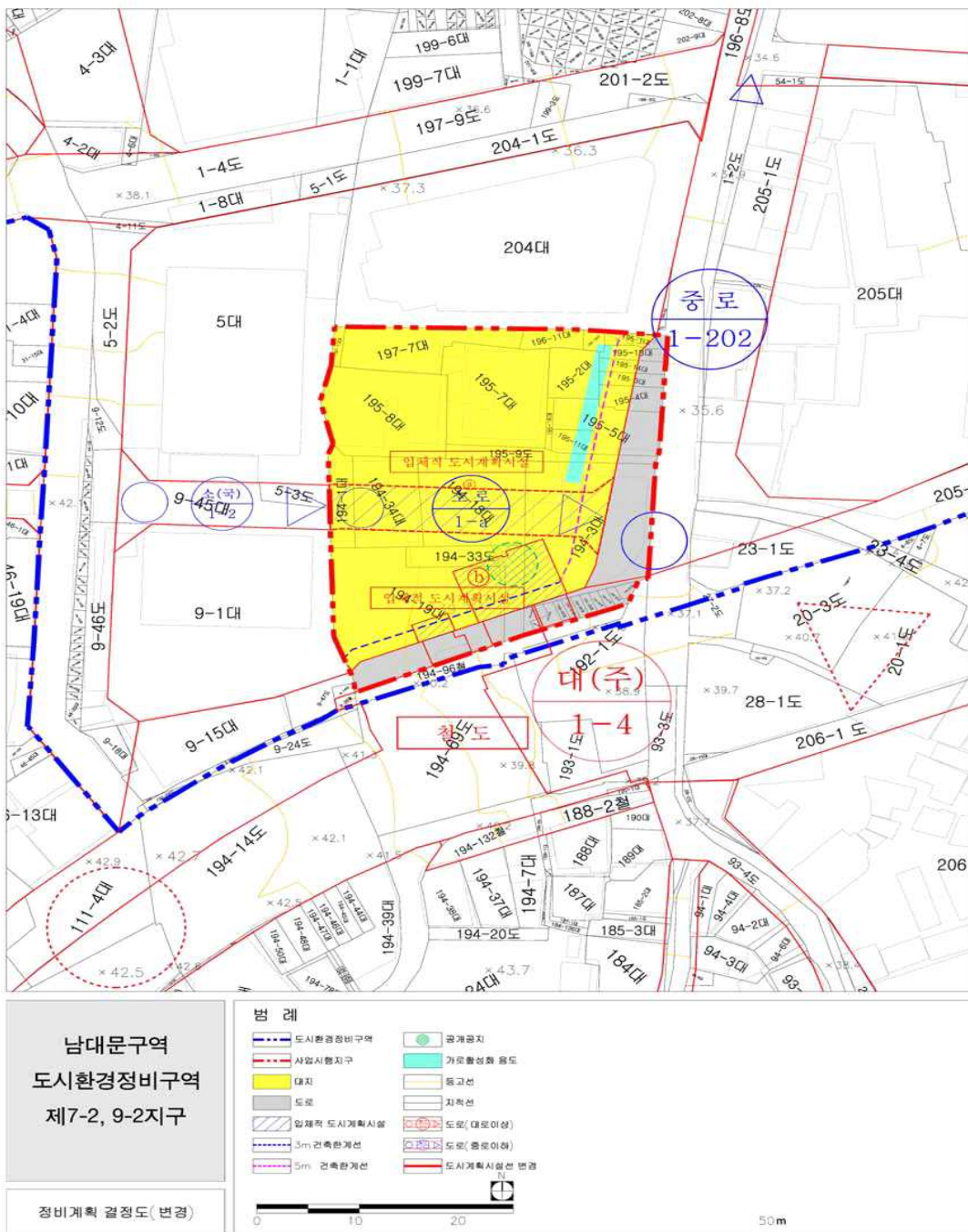
5) 도시계획시설(철도) 결정 조서

가) 철도(정거장)

구분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치	연장 (m)	면적(m ²)	최초 결정일	비고
기정	철도	도시철도 (정거장)	남창동 46번지 일대	206	4,858.2	서고시 제181호 (83. 3. 29)	· 7번출입구, 엘리베이터,환기구 : 입체결정
변경	철도	도시철도 (정거장)	남창동 46번지 일대	206	4,859.19 (+0.99)	서고시 제181호 (83. 3. 29)	· 7번출입구, 엘리베이터,환기구 : 입체결정

나) 입체적 도시계획시설(철도:정거장)

■ 정비계획 결정(기정)도



※ 본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● 서울특별시중구 고시 제 2018-37호

도로명주소 부여고시

우리구 신축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8년 4월 11일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 도 로 명 고시일	도로명주소 부여기준 도 로 명 부여기준
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가 272-15	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35길 19	2018.04.11.	동호로35길의 기초번호로 부여
		2010.06.30.	동호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
서울특별시 중구 홍인동 144	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73길 24	2018.04.11.	퇴계로73길의 기초번호로 부여
		2010.06.30.	퇴계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(☎02-3396-5944)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(www.junggu.seoul.kr)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 고시 후 『도로명주소법』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『도로명주소법』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『도로명주소법』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.

● 서울특별시중구 고시 제 2018-38호

도로명주소 폐지고시

우리구 도로명주소 폐지사항이 있어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8년 4월 11일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

연번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자	폐지사유
1	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6길 71-4	2018.04.11.	건물말소
2	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176	2018.04.11.	건물말소
3	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176-2	2018.04.11.	건물철거
4	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176-4	2018.04.11.	건물말소
5	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176-6	2018.04.11.	건물말소
6	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176-8	2018.04.11.	건물말소
7	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176-10	2018.04.11.	건물말소
8	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176-12	2018.04.11.	건물철거
9	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176-14	2018.04.11.	건물말소
10	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178	2018.04.11.	건물말소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(☎02-3396-5944)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(www.junggu.seoul.kr)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서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
● 서울특별시중구 고시 제 2018-275호

신당제11구역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32호(2008.1.31)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되고, 중구고시 제2009-12호(2009.3.20.)로 경미한 변경 고시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164호(2011.6.23)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, 중구고시 제2014-14호(2014.2.26)로 경미한 변경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2-78호(2012.08.08.)로 사업 시행인가, 제2014-109호(2014.12.12.)로 사업시행변경인가, 중구 고시 제2015-101호(2015.12.09.)로 시행변경인가 되고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5-73(2015.8.31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 된 신당 제11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내용을 고시합니다.
2.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서는 서울특별시중구청 주택과 및 신당제1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2018년 4월 11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가. 사업의 종류와 명칭 : 신당제1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

나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특별시 중구 85-10번지 일대

다. 정비구역의 면적 : 8,119.00㎡(대지 6,439.80㎡, 정비기반시설 1,679.20㎡)

라.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

-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: 신당제1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조합장 김거부)

- 사무소의 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90길 36

마.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일 : 2018. 4. 11.

바.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요지

1)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,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, 공공시설 설치계획

사. 관계서류 : 생략(서울특별시 중구청 주택과 비치서류와 같음)

토지 소유권 변환	총면적	시행 전	사유토지	3,485.61㎡		국공유지		4,633.39㎡		그밖의 토 지	-		
	8,119.00㎡ (116필지)	시행 후	환지대상			시행자 보유						시행자 보유토지 배분면적	그 밖의 토지
			기존 사유지	점유 자 매수	존치 국공 유지	청 산	수 용	협의 매수	국공유 지 불하	국공유 지 무상양 수			
			2,517.41	1,063. 1	363	493		475.2	3,012. 3	195	-		
토지 용도 변환	용 도	택 지				정비기반시설			그 밖의 용도				
		소계	공동 주택	단독 주택	그 밖의 건축시설	소계	도로	공원	소계				
	시행전 8,119.00(㎡)	7,722.2	33	7,689.2		396.8	181	215.8	-	-			
	시행후 8,119.00(㎡)	6,439.8	6,439.8			1,679.2	732.8	946.4	-	-			

건 축 물 및 건 축 시 설	시행전 건축물	허 가 건축물		72동			무허가 건축물		5동							
	시행후 건축 시설	용 도		대지면적 (㎡)	동 수 (동)		총 수		세 대 수 (세대)		건축연면적 (㎡)		비 고			
		주택	소계	6,577.0 0	3		-		176		24,115.683					
			분양	6,577.0 0	3		지상3층 지상16층		176		24,115.683					
			임대	-	-		-		-		-					
		상 가	-	-		-		-		-						
	공 급 계 획	공급대상		주택규모별(전용면적기준)공급세대수									상가면적 (세대)		그 밖의 건축 시설면적 (㎡)	
				계	45.585 5	59.919 7	59.4458	72.6158	72.6834	72.9410	84.6739					
		계	176	9	26	40	26	47	12	16	-					
		토지등 소유자	71	2	23	21	4	7	0	14	-					
		보류시설	1							1	-					
		일반분양	104	7	3	19	22	40	12	1	-					
		임 대	-	-	-	-	-	-	-	-	-	-				
분 양 신 청 및 권 리 신 고	구 분	분 양 신 청					수인이 1인의 분양대 상자로 선	권리신고(권리종류별)								
		소 계		토지및 건축물 소유자	토 지 소유자	건축물 소유자		소 계		근저당	압류	경매				
	신 청 인 수	71		39	4	28	3건 7(인)	14	6	8	-					
권 리 자 별 관 리 처 분 (단위: 인)	권 리 자 별	대 상	분 양				청 산	수 용	협 의 수	그 밖의 분						
			소 계		주 택	상 가					그 밖의 용도					
	계	89		71	71	-	-	-	18	-	-					
	토지및 건축물 소유자	48		39	39	-	-	-	9	-	-					
	토 지 소유자	10		4	4	-	-	-	6	-	-					
건축물 소유자	31		28	28	-	-	-	3	-	-						
소유권 외의 권리	대 상	14건			이전 설정		14건		해지 또는 소멸		- 건					
세입자 대 책	대 상	196		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이전비 지급		71		주거이전비 지 급		101		비대책	95			
정 비 기 반 시 설	신 설						용 도 폐 지									
	종 류	명 칭	규 모	설치비용		관리청	종 류	명 칭	규 모	국공유지(㎡)	무상양여(㎡)					
	소공원2	중구	79.7㎡	243,948,000		중구청	도로	3-A	폭원6M (연장41M)	202.00	195.00					
	소공원1	중구	284.7㎡	595,280,000		중구청										
	근린공원	서울시	368.4㎡	74,384,000		서울시	도로	3-B	폭원6M	597.00						
	도로	2-B	946.4 ㎡	2,970,400,000			근린공원	무학봉 근린공원	37,898㎡ (330㎡)	330.00						

공 고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8-277호

중구 여성플라자 위탁운영체 모집공고

「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플라자 설치 및 운영조례」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중구여성플라자 위탁운영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2018. 4. .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1. 시설 현황

- 시설명칭 : 중구 여성플라자
- 소재지 : 서울시 중구 다산로32길 5 (신당동 292-60외 1)
- 규모 : 지상3층 ~ 지상6층(대지 608㎡, 건물연면적 2,178㎡ 중 1,014㎡)
- 위탁시설 : 여성플라자 지상3층 ~ 지상6층
(※ 지하1층 ~ 지상2층과 지상3층의 일부는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로 사용)

2. 위탁내용 : 중구 여성플라자 운영

3. 위탁기간 : 계약일로부터 3년간

4. 위탁조건

- 관장은 관련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시설운영에 적합한 인격과 소양을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주체인 법인의 대표에 있지 아니한 자여야 함.
- 시설운영 중 여성플라자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적정한 범위에서 부담할 수 있음.
- 수탁자는 중구여성플라자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,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금지

5. 신청자격

- 남녀평등의 촉진,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서, 여성의 복지, 직업 및 사회·문화·교육 분야에 대한 경험과 운영능력을 갖추어야 함
- 공고일 현재 주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 할 것

관장 내정자 자격기준

▶ 중구여성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, 여성복지 관련사업 등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시설운영에 적합한 인격과 소양을 갖추고 있는 자. 다만, 사업주체인 법인의 대표에 있지 아니한 자여야 함

6. 신청 제외 대상 (결격사유)

-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(자)
-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
-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
- 운영주체의 지도·감독 시 공신력·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자

7. 공고 및 접수

- 공고기간 : 2018. 04. 09. (월) ~ 2018. 04. 20. (금)
- 접수기간 : 2018. 04. 18. (수) ~ 2018. 04. 20. (금) 18:00까지
- 접수장소 : 서울특별시 중구청(본관 1층)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
- 접수방법 : 근무시간 내 직접 방문접수 (수~금, 09:00~18:00)
(※토요일 · 공휴일 및 우편, 택배, 인터넷 접수는 불가함)

8. 제출서류 : 원본 포함 17부

구분	서류항목	운영체	
		법인	단체
개별 사항	■ 법인의 정관, 등기부 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(법인인감증명서 첨부)	○	
	■ 등록증 또는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		○
	■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	○	○
공통 사항	■ 중구여성플라자 위탁 신청서		
	■ 대표자의 경력사항		
	■ 중구여성플라자 관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		
	■ 중구여성플라자 관장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		
	■ 법인·단체 등의 여성 관련 업무실적을 증명하는 서류		
	■ 법인·단체 등의 조직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서류		
	■ 향후 3년간 중구여성플라자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		
	■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(자산현황)		
	- 부동산(등기부등본), 동산(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)		
	-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		
	- 법인(법인명의 재산), 단체(단체명의 재산)		
	■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(평가 등)		

- 신청서 : 중구청 홈페이지(www.junggu.go.kr) 고시/공고에서 다운받아 사용
- 제출부수 : 신청서 및 관련 서류 17부 (원본 1부, 사본 16부), 요약서 (17부, 3~5페이지 분량)
※ 꼭수표시 요망 및 자산현황 관련서류(부동산 등기부등본)는 원본에만 첨부
- 심사자료는 양면 인쇄, 쪽 표시, 목차 라벨 표시, 반드시 제본

9. 수탁법인(단체) 선정방법 및 심사결과 발표

- 서울특별시 중구여성플라자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선정
- 다수법인이 신청하였더라도 위원회가 전부를 부적격으로 결정하는 경우 재모집
- 신청법인(단체)은 심사당일(별도통보) 참석하여 사업계획 등을 설명하여야 하며, 불참 시에는 포기하는 것으로 처리함.
- 결과발표 : 개별 통보

10. 기타 유의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
- 필요시 현장조사 실시
- 법인·단체 대표자(당일 위임자)와 관장 내정자가 함께 출석하여 7분 내외 운영계획 발표 및 관장의 전문성 등 종합평가 면접
-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에 위탁체 선정을 무효로 함
- 위탁신청서는 중구 홈페이지(www.junggu.seoul.kr) 「고시/광고」에 게재함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여성가족과 (☎3396-5403)로 문의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8-281호

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

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정지 요청서를 제출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(자동차의 운행정지 등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(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), 제23조(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) 규정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18년 4월 11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1. 공고의 명칭 : 자동차 운행정지 공고

2. 공 고 기 간 : 2018. 4. 11. ~ 2018. 4. 25.

3. 공 고 대 상

- 자동차등록번호 : 59라77**외 8대
- 소 유 자 명 : 비*****코리아(주) 외 8대
- 운행정지 명령일자 : 2018. 3. 1. ~ 3. 31.
- 운행정지 사유 : 소유자 요청

4. 공 고 내 용

-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,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-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, 자동차관리법제13조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 가능하고, 무등록 자동차 운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-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중구청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(02-3396-6248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붙임] 운행정지자동차현황

운행장사상태	자동차등록번호	소유자명	소유자등록번호	사용본거지주소
등록	59라77**	비*****코리아(주)	110111-2*****	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
등록	31무90**	비*****코리아(주)	110111-3*****	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
등록	06조91**	메*****서비스	110111-4*****	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
등록	서울55노38**	메*****서비스	110111-5*****	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
등록	서울55로33**	메*****서비스	110111-6*****	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
등록	57머90**	메*****서비스	110111-7*****	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
등록	06조84**	메*****서비스	110111-8*****	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
등록	42너83**	메*****서비스	110111-9*****	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
등록	62무16**	메*****서비스	220-86-4****	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